

제 684 호

1978.11. 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자춘

편집 : 문화공보관 김인동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문 명

제 495 호 : 서울특별시구·출장소위임권결규정증개정규정 3

◎ 고 시

제 574 호 : 주택개량율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3

제 575 호 :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변경 4

제 576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승인 6

제 577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변경결정 7

제 57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지적승인 7

제 580 호 : 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및주차장) 결정및지적승인 8

◎ 공 고

제 440 호 : R, S 표시장지처분 8

◎ 사 명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017

훈 령

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
명한다.

1978년 11월 3일

서울특별시 장 구 자 순 인

◎서울특별시훈령 제 495 호

서울특별시 구·출장소 위임
전결 규정중 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 구·출장소 위임 전결
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"별표" 12. 건축과 민원사상관중
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건축과

제 별	단위사업	세 부 사 업 명	인 세 권 가				
			담당자	계장	과장	국장	구성장
각계공동	민 원	1.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1) 300㎡이상 일반건축 · 물 및 150㎡이상 특수 건축물 2) 3층이상외 건축물 3) 연립주택 4) 건축법상 제단서 규 정 적용 건축물 5) 위 차호 이외의 건 축물					0 0

고 시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구더 시행
한다.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574 호

주택개발유위안개발사업
관리처분계획인가

1.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

차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공고 제 135 호 (78.4.6)로 공람 공고한 청량3. 용암2 구역과 서울시 공고 제 170 호 (78.4.29)로 공람한 바 있는 거여 1,3 구역에 대하여 일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와 동법 제 65 조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고시 한다.
3. 본 고시에 대한 서류 송달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며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서 관계증명 발급증임을 알려 드립니다.

1978.11.4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75 호

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0 호 (77.5.16)로 시행허가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25 호, 동법시행령 제 26 조, 동령 제 27 조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본 변경허가에 관한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가. 로선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 장	시	점	중	점
기정	소로	3 류	6 m	194 m	봉천동	산 163-1	봉천동	산 162-1
변경	"	"	6 "	194 "	"	"	"	"
기정	"	"	6 "	60 "	"	163-17	"	163-18
변경	"	"	6 "	60 "	"	"	"	"
기정	"	4 류	4 "	78 "	"	163-19	"	163-1
변경	"	3 류	6 "	78 "	"	"	"	"
기정	"	4 류	4 "	78 "	"	163-34	"	163-37
변경	"	"	4 "	26 "	"	163-22	"	163-22
기정	"	"	4 "	103 "	"	163-38	"	163-30
변경	"	3 류	6 "	118 "	"	"	"	"

구분	등급	류별	복원	연 장	시	점	총	합
기정	소로	4류	4㎡	116㎡	봉천동	산164-1	봉천동	산 163-22
변경	"	"	4㎡	26㎡	"	163-7	"	163-22
기정	"	"	4㎡	116㎡	"	163-16	"	163-22
변경	"	"	4㎡	12㎡	"	162-1	"	162-1
신설	"	3류	6㎡	160㎡	"	163-19	"	163-18

나. 공변조서

구분	분	류	위	치	면	적	비	고
기정	아	동	공	변	봉천동	산162-1	1,008㎡	
변경	"	"	"	"	산162-1	1,228㎡		

다. 쓰레기 적환장 조서

구분	시	설	명	위	치	면	적	비	고
기정	쓰레기	적환장		봉천동	산162-1	605㎡			
변경	"	"		봉천동	산162-1	744㎡			

1978.11.2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63-1 의 22 필지
 나. 사업의종류 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
 다. 사업시행면적 : 24,103 평
 라. 사업시행자 : 성북구 동소문동 1 가 86 짜 수 남
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착수 - 77.6.4. 준공 79.3.31
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경사 : 별 락
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 락
 아. 허가내용
 환경 설계도서와 같음 (별 락).

○ 서울특별시고시 제 576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526 호 (78. 10.6) 로 결정 및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
2. 이에 관한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11. 3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국민학교	방배동 산 23-2 일대	11,827 (3,580 평)	
중 학교	봉천동 681-19 일대	19,916 (6,030 평)		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 류		6	115 m	관악구 방배동 167-4	방배동 169-16	
변경								폐지
신설	소로	3 류		6	115 m	방배동 365-1	방배동 169-8	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별첨)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7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('77.3.16)에 의거 이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조서

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'1978.11.6.

서울특별시 장

구분	시 설 명	위 기	면 적	비 고
변경	(구획정리지구내 시장)	성동구 구의동 240-3	1,627.70평 (5,378㎡)	폐지

별첨 도면생략.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67 호(78.9.12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(77.3.

16)의 권한귀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11.6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 지적승인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 점	중 점	비 고
신설	소로	1		10	1,300	진관내동 104	진관내동 4	
"	"	1		10	1,400	진관의동 143	진관사	
"	"	2		8	230	" 373-2	진관의동 75-317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80호

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 및 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 및 주차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(77.3.16)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

○ 유통업무 설비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유통업무설비	성동구 군자동 장안평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194구획1호 채비지	30,407	중고자동차 매매

○ 주차장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주차장	성동구 군자동 장안평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194구획2호 채비지	31,920	자동차정비업소

별첨 도면참조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40호

K·S 표시정지처분

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, 제29조 규정

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11.7

서울특별시장

에 의거 다음과 같이 K·S (한국공업규격)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78.11.7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	제 1444 호	규격번호	KSC 7604
허가일자	77.5.2	종 목	교압수은 램프 HF 200
제조업체명	남북전기 (주)	처분기간	처분일로부터 1 개월 이후당사 의 해체조치가 있을때 까지
대표자	강 영 식	처분사유	K.S 규격 미달
소재지	서울성동구화양동 151-43		

사 령

◎ 1978.10.23 대 통 령
 서울특별시 제 1 부시장 김 성 비
 관 리 관
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

비상근 위원을 경함.

◎ 1978.11.2

지방행정주사보 이 현 근
 사 칙 다

지방행정 주사에 추서함.